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53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이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을 “(교부금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부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년도 교부금의 금액} \times (1 + \text{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times [1 + (\text{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times 100\text{분의 } 35]$$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명목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학령인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3세부터 17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④ 보통교부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7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교부금의 보전) 국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

(補填)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별교부금 재원”을 각각 “특별교부금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를 “(교부금의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별교부금 재원”을 각각 “특별교부금 금액”으로 한다.

①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962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 계상)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금의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2025년 교부금 차액의 정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부금 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은 75조6901억8400만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제3조(교부금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의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전년도 교부금의 금액} \times (1 + \text{명목 국내총생산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times [1 + (\text{학령인구의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변화율}) \times 100\text{분의 } 35]$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명목 국내총생산은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학령인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

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3세부터 17세까지의 인구를 말한다.

④ 보통교부금의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7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교부금의 보전) 국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교부금 금액이 전년도 교부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
1. -----

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② ~ ⑥ (생략)

제5조의3(교부금의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

----- 특별교부금 금액-----

2. -----

----- 특별교부금 금액-----

3. -----

----- 특별교부금 금액-----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3(교부금의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

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라 산정한 금액의 1,000분의 962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금액은 그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

-----.

1. -----

----- 특별교부금 금액-----

2. -----

----- 특별교부금 금액-----

3. -----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
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
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
분의 80

가. ~ 다. (생 략)

③ (생 략)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
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
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
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
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
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
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

----- 특별교부
금 금액-----

4. -----

--- 특별교부금 금액-----

가. ~ 다.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 계상) 국가는 회계연
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u>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u> <u>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u> <u>여 정산하여야 한다.</u>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3조 (교부금의 종류 등)	전년도 교부금에 명목 국내총생산 및 학령인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하여 교부금 산정
2	제4조 (교부금의 보전)	교부금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 규모 보장
3	제9조 (예산 계상)	교부금을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및 세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에 따른 교부금 증감·정산 규정을 삭제함
4	부칙 제2조 (교부금의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	2026년 및 이전 연도 교부금 차액 정산에 대해서도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예·결산액 차액 정산 미실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3조 (교부금의 종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제4조 (교부금의 보전)	
3	제9조 (예산 계상)	
4	부칙 제2조 (교부금의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	

2. 상세 사유

- 동 법률안은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 및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 보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교부금 산식 변경 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에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교부금 총액이 현행 제도(내국세 20.79% + 국세 교육세 일부) 유지 시와 비교하여 변동됨
 - 특히, '27년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 20.79%를 상회하여(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직접 귀속 수입 없음), 현행 대비 개정안에 따른 교부금 규모가 순감할 것이라 단정 짓기 어려움
- 현행 제도 유지에 따른 교부금 규모 추계는 ①패키지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전 현행 제도, ②「미래대응기금법」 제정 시의 현행 제도로 구분
 - ①의 경우, 향후 '27~'30년 내국세 및 국세 교육세 규모에 대한 공식 추계가 없어 현행 제도 유지 시의 교부금 규모 산정이 불가함
 - ②의 경우,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교부금의 모수였던 내국세 중 추가세수 등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될 예정이나 매해 미래대응기금 전출 규모(추가세수, 초과세수 등) 또한 현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불가하여 이에 따른 교부금 규모 산정이 불가함
- 한편, 법 개정 시에도 교부금 총 규모는 향후 지속 순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26~'30)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지난 5년간('21~'25)의 증가율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개정안의 시행이 시도교육청 세입의 순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이 및 추계 >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연평균증가율
59.6조원	76.0조원	65.4조원	64.6조원	70.3조원	4.2%
2026	2027	2028	2029	2030	('26~'30) 연평균증가율
76.4조원	78.9조원	84.3조원	90.1조원	92.7조원	4.9%

※ ('21~'25) 최종예산+자금미배정(△), ('26) 추경예산, ('27~'30) 향후 추계 기준

III.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	과장	실장·국장
전형수	박지산	권삼수	이강복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산	044-203-6654	jspark2492@korea.kr